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商標登錄 無效

〈大法院 第4部 判決〉(1988. 11. 8)

事件番號 : 87후 138

裁判長 : 김 상 원

關與法官 : 윤 관 · 김 용 준

1. 審判請求人(上告人) : 일본 가부시키 가이샤 산리오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 이만영(서울시 강동구 방이동 (105-13))
3. 原審決 : 特許廳 抗告審判所 1987. 11. 30字 1985年 抗告審判(當) 第143號
4. 主 文 : 上告를 기각한다. 上告費用은 審判請求人의 부담으로 한다.
5. 理 由 : 上告理由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商標의 類似與否는 2개의 商標를 의관·칭호 및 觀념에 있어서 客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商品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判別하는 方法에 의하여 判斷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의관·칭호·觀념中에서 어느 하나가 類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類似商標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原審이 本件商標와 引用商標(2)가 그 觀념에 있어서는 “고양이”라는 동물을 상징한 것으로 類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관에 있어서 “고양이”의 표현방법, 태양이 현저하게 다르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本件商標는 “키티”로, 引用商標(1)은 “켈랜드 헛” 또는 “캐트 앤드 해트”로 각 호칭되게 됨으로서 전체적으로 볼때 쉽게 구별되어 商品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없다고 判斷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증이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商標의 類似性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래미진·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原審判決 이유에 의하면 原審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本件商標와 引用商標(2)는 同一 또는 類似性이 없고 또한 引用商標(2)가 주지·著名商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주지·著名商標는 그 사용기간·사용방법·태양·사용량 및 거래범위등과 그 商品의 거래실적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客觀적으로 알 려졌느냐에 따라 判斷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引用商標(2)가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原審判斷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兩商標는 (1)다같이 圖形과 文字로 구성되어 있는데, 圖形부분은 그 표현방법이나 모양이 거의 同一하고 文字부분도

“Kitty”를 요부로 하고 있어서(英文의 소문자나 대문자로 된 것이 다를 뿐이다) 의관상 類似하며 (2)모두 “고양이”라는 호칭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文字부분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에도 本件商標는 그 한글표기에 따라 “키티”로 引用商標 (2)는 英文字 발음표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헬로 키티”로 호칭됨으로써 商標로서의 식별력과 관계가 없는 “헬로(HELLO)라는 것이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그 호칭에 있어서 類似하다고 보여지며, (3)각 圖形이나 文字에 의하여 “고양이”라는 관념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 결국 의관·칭호·관념등 전체적으로 보아 同一 또는 類似하다고 인정되는데도 原審이 그렇게 보지 아니한 것은 判例 商標의 同一 또는 類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裁量법칙을 어겼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先出願에 의한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라도 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가 아니면 商標法上 登錄을 받을 수 없에 商標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兩商標의 각 指定商標는 품질·형상·용도·거래실정등에 비추어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原審決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審判請求人의 請求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그 잘못은 審決結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결국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부담으로 하여 判例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㉞>

■ 아이디어뱅크 개설 안내 ■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는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를 發掘하여 이를 實用化될 수 있도록 關聯企業등에 連繫시킴으로서 汎國民的인 發明風土를 造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뱅크를 開設하였으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對 象 :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
- 申請方法 : 直接訪問, 書信 또는 電話
- 接 受 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우편번호 135-080 서울 江南區 驛三洞 814-5 發明獎勵館(TEL: 568-8263)
- 接受된 아이디어의 處理
 - 分期別로 審査하여 實用化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關聯企業에 實施斡旋
 - 特許·實用新案·意匠으로 設權可能하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出願誘導
 - 申請接受된 優秀한 아이디어는 綜合審査後 年末에 施賞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

(案) 特許廳 複寫業務 代行 (內)

本會에서는 對民서비스業務를 擴大하여 會員을 비롯한 資料利用者에 對한 便宜를 提供하고 效率的인 業務遂行을 하고자 特許廳 閱覽室의 特許文獻 複寫業務를 代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同 複寫手數料 徵收方法을 아래와 같이 變更 實施하오니 業務에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手數料徵收方法 : 現金收納(수입인지는 받지 않습니다)

◎ 金 額 : 枚當 100원(從前과 同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研修部 (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